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위단체

담 당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전화 02-701-768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전화 02-723-0666), 민변 서채완 변호사(전화 02-522-7283)

제 목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4. 8. 20. (총 12쪽)

보도자료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 공개해야

-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내부 지침 및 근거, 통지 유예 사유,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

시민사회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하고 질의서 접수

1. 취지와 목적

- 올해 1월 4-5일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당시 부장검사 강백신)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 관련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하면서 3천여 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2 통지의무 조항에 따라 8월 초 통신이용자들에게 문자로 통지가 되어 알려졌습니다.
- 다만, 검찰은 통지 유예 최장 기간인 7개월이 되어서야 통지하였으며, 유예 사유로는 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으로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을 제시하였으나 3천여 명 전체가 이 사안에 들어맞는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특히 해당 수사의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언론인들인 관계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이들과 통화한 시민들의 신원 조회와 정보 수집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주요 취재원들, 제보자들의 정보도 조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집 정보를 토대로 관계도 등을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더 수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사찰에 대한 언론인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 해당 수사의 시점이 통지의무가 법제화되기 전인 2023년 9월 초임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합리적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하지만, 명예훼손죄 수사에 3천여 명이상에 이르는 통신이용자의 신원 조회가 과연 적법한 범위인지는 의문이 아닐수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운운할 뿐 여러 의혹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진상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언론인과 시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확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규모, 관련 내부 지침 및 근거, 정확한 통지 유예 사유, 관련 수사 담당 검사 및 내부 승인 절차 유무 등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진정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 3천여 명이 전부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검찰은 정확한 정보와 진상을 공개하라
- 일시 장소: 2024. 8. 20. (화) 오전 10시 /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 프로그램
 - 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표1: 언론인 피해사례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 발표2: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표3: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발표4: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발표5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퍼포먼스(참가자 전원):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반인권성과 과잉수사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 질의서 접수 : 민원실로 이동
- 문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 민변
 02-522-7283

■ 붙임.

- 1. 참석자 주요발언
- 2. 검찰접수 공개질의서
- 3. <u>기자회견 사진</u>

1. 언론인 피해사례 /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저희들 취재하러 오신 동지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용자 정보 조회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반부패수사1부가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현재 추정컨대 3천 명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사건 나오겠지만 지속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된 대상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뉴스타파와 함께 실제 통신조회를 당했던 분들을 상대로 지금 플랫폼 만들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바로는 무려 250여 건입니다. 이게 그나마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본인들 제보 사실을 알리신 경우도 있지만 제보를 안 알리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250여 건 중에서 상당수가 언론입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들, 흔히 말하는 지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가 아닌 금속이나 보건노조 즉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다른 산별노조의 간부들도 통신 이용자 정보가 조회되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보통 명예훼손 수사하시면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된 부분만 따져가지고 조회하시면 되죠. 피의자 수사하시고 피고인으로 기소하셔서 재판하시면 되죠. 무려 드러난 것만 250여 개입니다. 추정하는 인원만 3천여 명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검찰이 정말 수사를 못하는구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우리가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준비할 때 최대한 범위를 줄여가지고 시험을 치는 게 일반인들인데 명예훼손 수사하면서 무려 3천 명을 털었다고 추정되는 거 검찰 반부패 수사 1부장님 참 무능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왜 그 정보를 보고 싶었습니까? 제 전화번호 털렸는데 제가 궁금합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언론노조가 이 검찰 이 정권에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 텐데 왜 뒤에서 숨어서 제 번호를 터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번 수사는 명예훼손 수사와 다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인망 방식으로 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수사를 간첩 잡는 수사라고 했는데 과연 반부패 수사 검사들은 명예훼손 피의자가 아니고 흔히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 반인권 세력, 이 세력들의 관계도 찾고 싶었던 것입니까? 검찰 무능하고 무섭습니다. 언론인들 말씀드렸다시피 취재원 보호가 저널리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특히 정치 자본 권력 문제는 그 권력들에 그 자본들의 중심에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취재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줄의 글 속에서 취재원을 찾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는 영장 필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들이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해서 이 건은 이번에 통신 이용자 조회가 됐든 진보 언론, MBC와 같은 PD가 사찰된 언론사 뿐 말고 조선 중앙 동아처럼 보수 언론도 똑같은 문제의식 가지고 접근해야겠습니다. 언론노조는 이 건이 또 다른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진숙을 내세워서 방통위를 장악하고 류희림을 내세워서 방송을 심의하는 정권이 이번에는 몰래몰래 언론이 누가 누구와 친하고 그리고 명예훼손 수사를 통해서 모든 걸 알아냈던 일종의 또 다른 언론 사찰입니다.

하여 저희들은 이 건을 국회를 통해서 국정조사 그리고 법사위 상임위에 대해서 국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이거 반짝하다가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관심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만큼 이 싸움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노조는 이번 건을 통해서 한 편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언론인들이 지켜야 될 취재원 보호 사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조선중앙동아 보수언론, 극우 언론 할 것 없이 이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당신들도 언젠가는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구 선관위에서 당시에 야당 대선후보로 출마하셔서 그 말씀하셨지요 이 정권이 제 아내와 제 친척, 제 가족들에게 정보를 털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구속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제 가족과 친구, 우리 이모 고모, 금속노조, 보건노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부패 수사 검사들 미친 거 아닙니까? 당장 구속 수사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검찰 수사 규탄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저는 지난 8월초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올해 1월 16일에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제재를 위해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공익신고가 지난 12월에 있었죠. 이 사건 공익제보자를 적반하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의뢰했고,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통신이용자 정보 사후 통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통신이용자 정보조회 통보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찜찜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탄하고 항의하고 있는 사건, 대규모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사건은 2023년 9월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에서보기)입니다. 대선직전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사)가 2011년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인터뷰후 김만배에게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금품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여권에서는 이 보도와 관련된 사건을 '국기문란행위'라느니, '대선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들과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 등에 대규모 중징계를 내리는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 손보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번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혐의 수사라는 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대통령의 의지로 진행되는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 무리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명예훼손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법이 아닌 검찰 비공개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을 우회하여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해당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도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는 관련 예규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전 법원은 검찰의 비공개는 잘못되었다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불법일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셋째, 만에 하나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이 수 천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사건인가입니다. 이 번 수사가 지키고자 하는 법익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입니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가 이뤄진 것 자체가 수사 권한의 남용입니다. 3,000명인인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과 취재원,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인들이 대규모로 정보 조회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하는 것 그것이 '사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 이 번 명예훼손 수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고, 보도 당시는 대통령후보입니다. 우리 법원은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권력감시의 대상자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다른 혐의는 몰라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이 번 검찰의 수사는 법원의 유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수사 과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와 기자들을 손봐 앞으로의 비판을 막고자 하는 '보복수사'이자 언론인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입니다.

얼마전 이 사건 기소가 있었는데,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음에도 돈거래를 한 김만배 신학림만 구속기소되었을뿐, 관련 기자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명명했지만 그 수사결과는 초라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이 번 사건 수사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의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3. 통신이용자정보 대규모 조회의 문제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검찰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정보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가입·해지일시 정도'라며, 마치 통신이용자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용자정보와 같은 메타 데이터 역시 통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통신 정보이고, 따라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이고, 특정 시점에 얼마나 자주 연락을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가 대규모로 조회될수록 더욱 포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이나 정치인의 경우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서 취재원, 제보자, 내부고발자 등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이들은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공익 목적의 제보를 위해 나서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하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국제 인권기구들도 엄격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권고해왔습니다. 이미 2015년에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을 방문했던 조셉 A.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방문 조사 결과 보고서(2021) (A/HRC/46/37/Add.6)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막고 현재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청의 수를 줄임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청은 사법부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제인권기준과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사전·사후에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가 없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매년 500만건 내외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건수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단지 정보수사기관의 서면 요청만으로 매우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수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아무런 감독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진상규명 요구 / 최새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최새얀 변호사입니다. 한 권력자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인을 포함한 무려 수천명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능키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며, 이를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 전무한 상황입니다.

유엔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국제인권법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립해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도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자의적 간섭이 금지되고,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검찰이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보유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제대로된 설명 없이 통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영장 또는 허가와 같은 법원의 사전적 통제, 통신정보 수집의 전반적 적정성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검찰의 통신수사가위법한지 다툴 수 있는 절차의 마련 등은 디지털 시대에 남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시민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2개 국회가 이번에야 말로 입법을 통해, 지금까지 남용되어 온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취득을 근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검찰에 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은 검찰에 의해 사찰당한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지금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최소한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죄 수사를 명목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2)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결정하고 이를 승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건수사의 담당 검사,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3) 3,000여명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관련 내부 지침 또는 근거가 있습니까?
- 4)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수사를 위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 5) 3,000여명 전체에 대해 통신유예를 결정하고 이를 승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6) 3,000여명 전체에 대해 통신유예를 결정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7) 수집된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분석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 8) 수집된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정보 중에 폐기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까?

검찰은 '수사를 위해 적법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라는 형식적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3,000여명에 이르는 정보를 취득하고, 그 통지조차 유예한 것은 어떠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경위를 낱낱이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5.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및 의미 브리핑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이지은입니다.

앞선 발언자들께서 충분히 설명하신 대로 이번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조회는 많은 부분에서 적법하지 못한 과잉수자이자 현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제도의 입법공백을 교묘히 악용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느닷없이 통지를 문자로 받은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내가 이런 수사에 연루된 것인지, 도대체 문자에 적힌 수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지어 직접 검찰에 전화해 왜 조회대상인지에 대해 물어본 시민도 있습니다만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수사기관의 수사가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권한남용이라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위법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1) 대통령명1인의 명예훼손 수사에 이렇게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조회가 필요한가? 도대체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가? 검찰은 사찰 논란이 일자 통신조회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일 뿐이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언제,누구와,얼마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인지를 파악하는 관계도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불법사찰, 언론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다른 공공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확보해 한 개인에 대해 프로파일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찰이아니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을수록 의혹은 커질 것입니다.

- 2) "사건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는 제외했다는 해명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관계없어 보이는 이 등을 분류하는 내부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제외된 대상자들에게도 통지를 했는지, 했다면 언제 하였는지, 만약 유예했다면 이런 대상자등에 대한 유예사유는 무엇입니까?
- 3) 이 사건의 담당 검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조회를 하면서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적사항 등이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것이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수사관은 법률개정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공백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무더기 통신이용자조회가 아니라 내부의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필요최소한의 한도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